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72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김한규·신정훈·김성환

김 윤 • 박홍배 • 채현일

윤건영 • 이재관 • 오기형

강준현 • 주철현 • 이병진

전진숙 • 문대림 • 장철민

박희승 • 김영환 • 박지원

서미화 · 서영교 · 이광희

문금주 · 오세희 · 권향엽

위성락 • 추미애 • 임미애

최민희 의원(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스토킹행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개입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신설하여 교제폭력 행위 자에게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 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스토킹범죄의"를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를 "피해자에"로, "피해자를"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피해자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제3호) 중 "스토킹범죄로"를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로"로 한다.

- 3. "교제(交際) 관계"란 애정에 기반한 연인(戀人)관계나 연인관계에 이르기 위하여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
- 4. "교제폭력행위"란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 반하는 행위 및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상대방의 기본적인 권리, 자원을 박탈함으로써 일상을 지배하는 강압적 통제행위를 말한다.
- 5. "교제폭력범죄"란 교제폭력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제1항·제 3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257조제1항, 제258조제 1항·제2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2조(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 및 제264조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78조(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79조(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80조(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1조제1항(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제283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2조 및 제305조의2(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및 제302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1조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2장의 제목 중 "등의"를 "및 교제폭력범죄 등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신고"를 "또는 교제폭력행위 신고"로 하고, 같은 조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토킹행위에"를 "스토킹행위 또는 교제폭력행위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스토킹행위의"를 각각 "스토킹행위 또는 교제폭력행위의"로, "스토킹행위를"을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스토킹행위자와"를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와"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스토킹 피해"를 "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피해"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스토킹행위의"를 "스토킹행위 또는 교제폭력행위의"로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교제폭력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교제폭력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5조제3항 중 "스토킹행위가"를 "스토킹행위 또는 교제폭력행위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상대방등이나"를 "상대방등 또는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이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를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조제2항제1호의"로,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 주거등을"을 "주거등을"로, "사법경찰관에게"를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사법경찰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스토킹행위의"를 "스토킹행위 또는 교제폭력행위의"로 하며, 같은 조제5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및"을 "또는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대방등이나"를 "상대방등 또는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이나"로 하며, 같은 조제6항 각호 외의 부분 중 "긴급응급조치"를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로 하고, 같은 조에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4조제2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교제 폭력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
 - 가. 제4조제2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교제폭력행위의 상대 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의 결정
 - 나. 제4조제2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의 주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다. 제4조제2항제2호의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교제폭력행위의 상대 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의 결정

제8조제1항 중 "스토킹범죄가"를 "스토킹범죄 또는 교제폭력범죄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잠정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을 "조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각"을 "및 제2항 각"으로, "잠정조치"를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4호의"를 "제4호 및 제2항제3

호의2 또는 제4호의"로, "스토킹행위자"를 "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의2에"를 "제1항제3호의2 및 제2항제3호의2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피해자 또는"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으로,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를 "가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에"를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로, "스토킹행위자에게"를 "스토킹행위자에게"를 "스토킹행위자에게"를 "스토킹행위자에게"를 "스토킹행위자에게"를 "스토킹행위자에게"를 "스토킹행위자에게"를 "스토킹행위자에게"를 "스토킹행위자에게"를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에게"로, "스토킹행위자의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스토킹행위자에게"를 "스토킹행위자에게"로,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에게"로, "스토킹행위자가"를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원은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교제폭력행위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피해자에 대한 교제폭력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의 부착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⑧ 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 및 제2항제2호·제3호·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스토킹행위자에게"를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2호의"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을 "주거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스토킹행위자에"를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9조제1항제3호의 2"를 "제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9조제2항제3호의2"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스토킹행위자나"를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토킹행위자"를 "스토킹행위자나 교제폭력행위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스토킹행위자"를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제6항"을 "제9조제7항"으로, "제9조제1항제4호에"를 "제9조제1항제4호에"를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9조제2항제4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스토킹행위자에"를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토킹행위자 또는"을 "스토킹행위자, 교제폭력행위자 또는"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스토킹범죄의"를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전담"을 각각 "및 교제폭력범죄전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담"을 각각 "및 교제폭력범죄전담"으로, "스토킹범죄의"를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로 한다. 제17조의2 전단 및 후단 중 "스토킹범죄를"을 각각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4호 중 "스토킹범죄의"를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토킹범죄를"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를"로, "치료프로그램의"를 "및 교제폭력 치료프로그램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스토킹범죄를"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동의"를 "및 교제폭력행동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스토킹범죄를"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4항을"을 "제9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제폭력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제폭력행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 제1조(목적) -----스토킹범죄 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 및 교제폭력범죄의-----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 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피해자를----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교제(交際) 관계"란 애정에 기반한 연인(戀人)관계나 연 인관계에 이르기 위하여 호감 을 가지고 만나는 친밀한 관 계를 말한다. 4. "교제폭력행위"란 교제 관계 <신 설> 에 있거나 있었던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 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및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신 설>

상대방의 기본적인 권리, 자 원을 박탈함으로써 일상을 지 배하는 강압적 통제행위를 말 한다.

- 5. "교제폭력범죄"란 교제폭력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 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제1항・제3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2조(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 및 제264조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9장 체 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 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 278조(제276조제1항, 제27 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 다), 제279조(제276조제1 항, 제277조제1항의 죄에

만 해당한다), 제280조(제2 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1조제1항(상해에 이르 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30장 협 박의 죄 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제283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및 제285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2장 강

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
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
조, 제302조 및 제305조의
2(제297조, 제297조의2, 제
298조부터 제300조까지 및
제302조의 죄에만 해당한
다)의 죄

<u>마. 「형법」 제2편제33장 명</u> <u>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u>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 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생략)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 제3조(스토킹행위 또는 교제폭력 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 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 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 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 卫

제309조 및 제311조의 죄 <u>바. 「형법」 제2편</u>제37장 권 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 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의 죄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죄 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되는 죄
- <u>6.</u> -----스토킹범죄 및 교 제폭력범죄로-----
- 제2장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 등의 처리절차 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 진행 중인 스토<u>킹행위에</u> 대하 치) ----스토<u>킹행위 또는 교</u> 제폭력<u>행위에</u>-----

7. (현행 제4호와 같음)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 1. 스토킹행위 또는 교제폭력행 위의-----스토킹행위 또는 교제폭력행위의-----이를----

-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3. (생략)
-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 4. 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피해 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 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하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생 략)

<신 설>

- 2.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 행위자와-----
 - 3. (현행과 같음)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사법경찰관은 교제폭력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교제폭력행위 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 하여질 우려가 있고 교제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교제폭력행위자에 게 직권으로 또는 교제폭력행 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 인 또는 교제폭력행위를 신고 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 다.
- 1.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2.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에 대 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② 사법경찰관은 <u>제1항에</u>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u>스</u>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격 강점성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 ① · ② (생 략)
- ③ 지방법원 판사는 <u>스토킹행</u> <u>위가</u>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 다.
- ④ · ⑤ (생 략)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u>상대방등이나</u>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u>스</u>
토킹행위 또는 교제폭력행위의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스토킹행
위 또는 교제폭력행위가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상대방등 또는 교제폭력행위
의 상대방이나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 ① (생 략)
-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 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 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u>스토킹행위의</u>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 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 토킹행위의 상대방등 및 긴급 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 는 고지하여야 한다.
- 스토킹행위의 <u>상대방등이나</u>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
 경의 취지 통지
- 2. (생 략)
- ⑥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1 (1 6) E D)
2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은 제4
조제1항제1호 또는 제4조제2항
제1호의
주거등을직접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사법경찰
관에게
③ 스토킹행위 또는 교제폭력
<u>행위의</u>
④ (현행과 같음)
⑤
또는 교제
<u> </u>
· 1 <u>상대방등 또는</u>
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이나-
O /처체되 가 O \
2. (현행과 같음)
⑥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

① (청해고 가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 다.

1.·2. (생략) <신설>

급조치

- 1. 2. (현행과 같음)
- ① 제4조제2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 이 지난 때
-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교제폭력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제4조제2항제1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교제폭력 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 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 나. 제4조제2항제1호의 긴급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 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 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 를 청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 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의 주 거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다. 제4조제2항제2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교제폭력 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 람을 피해자로 하는 제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제	8조	(잠경	はる	치의	청구)	1		
		<u>스토</u>	킹팅	범죄	또는	亚石	세폭	력
	<u>범</u> 조	<u> 가</u> -						
	2	~	4	(현행]과 같	음)		
제	9조	(잠경	성조:	<u>치)</u> (1			
					- – – – -		-조	え]
	_							
			•					

1. ~ 4. (생 략) <u><신 설></u>

- ② 제1항 <u>각</u> 호의 <u>잠정조치</u>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

- 1. ~ 4. (현행과 같음)
- ② 법원은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수 있다.
- 1. 피해자에 대한 교제폭력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

 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

 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의 부착 4 국가경착과서의 유치장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③ ----<u>및 제2항 각</u>-----<u>조치</u> (이하 "잠정조치"라 한다)----.
- <u>4</u> -----
- 제4호 및 제2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 _____
- -----스<u>트킹 또는</u> 교제폭력<u>행위자</u>-----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 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 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u>피해자 또는</u> 그의 동거인, <u>가족, 그 법정대</u> 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 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u>스토킹행위자에게</u>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2. 스토킹행위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행위자에게

<u>⑤</u> 제1항제3호의2 및 제2항제3
호의2에
<u>.</u>
1. ~ 3. (현행과 같음)
<u>⑥</u>
피해자, 그 법정
대리인 또는가족에게
्राची वी यक्त स्थापन स्यापन स्थापन स्यापन स्थापन
<u>⑦</u> 제1항제4호 및 제2항
<u> </u>
제4호에스토
제4호에스토 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
제4호에스토 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
제4호에스토 <u>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u> <u>에게</u>
제4호에스토 <u>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u> <u>에게</u>
제4호에스토 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 에게
제4호에스토 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 에게
제4호에스토 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 에게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 람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 <삭 제> 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 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 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 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 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행위자가-----

⑧ 제1항제2호·제3호·제3호 의2 및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 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 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 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 로 제1항제2호 · 제3호 및 제3 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 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u>스토킹</u>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u>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u> <u>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u> <u>1항제2호의</u>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u>피해자 또는 그의 동</u> <u>거인, 가족이 주거등을</u> 옮긴 경 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 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u>스토킹행위자에</u>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7

제	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스토킹
	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에
	<u>게</u>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
	9조제2항제2호의
	<u>주거등을</u>
	,
	4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
	<u>폭력행위자에</u>
	⑤
	제9조제1항
	제3호의2 및 제9조제2항제3호
	<u>의2</u>
제	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 ③ (생 략)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 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 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 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 야 한다.
- 1. (생략)
- 2. <u>스토킹행위자</u>: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 3. 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스도강행위사 또는 교세폭덕행
위자나
② · ③ (현행과 같음)
4
스토킹행
위자나 교제폭력행위자
1. (현행과 같음)
2. 스토킹 행위자 또는 교제폭
<u>력행위자</u>
3. <u>제9조제7항</u>
<u>제9조제1항제4호</u>
또는 제9조제2항제4호에
5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에

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 실한다.

제12조(항고) ① 검사, <u>스토킹행</u> <u>위자 또는</u> 그 법정대리인은 긴 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17조(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 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 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 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야 한다.

 제12조(항고) ① <u>스토킹행</u>
위자, 교제폭력행위자 또는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
사제) ①
및 교제폭력범죄 전담
범죄 전담
②
<u>및</u> 교제폭력범죄
전담
전담
<u>.</u>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제2항의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 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 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스토킹범죄를 신고한사람"으로 본다.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 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

	③		
		및	교제
	폭력범죄 전담		
	및 교제폭력범죄 전담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	력범	죄의
제	 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 신
	변안전조치)		
		스토	<u>킹 범</u>
	죄 및 교제폭력범죄를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	력범	죄를
	,		
제	17조의3(피해자등의 신		•
	생활 비밀 누설 금지)	(1) -	

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 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 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 1. ~ 3. (생략)
- 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 ② (생 략)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
의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
과) ①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를
पो <i>जा</i> गो
<u>및 교제</u>
<u>폭력 치료프로그램의</u>
,

- 1. 2. (생략)
- ② 법원은 <u>스토킹범죄를</u> 저지 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 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스토킹 <u>행동의</u> 진단·상담
- 2. (생략)
- 3. 그 밖에 <u>스토킹범죄를</u>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 ⑥ (생 략)
-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u>제9조제4항을</u> 위반하여 전자 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 2. · 3. (생략)
 -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

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 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④ (생 략)

<u>는</u>	같은	- 조	제2형	}제2호	. ・ ス	레3호
(3)	• (<u>4</u>) (কৃ	여행과	같음))	